

군위고등학교 계약제 교원(전일제 강사) 채용 공고

2022학년도 군위고등학교 계약제 교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형 내용

가. 교과 및 인원

- 전일제 강사 - 체육과 1명

나. 채용 기간

- 2022. 8. 16(화) ~ 2023. 2. 28.(화)

다. 응모 자격 및 지원 자격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62세) 미 해당자 다만, 1, 2차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65세까지 응모 가능
- 자격: 해당 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3의(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보수 및 복무: 경상북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용 지침”에 의함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일	비고
지원자 공통	가. 지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진 첨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원서접수 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다.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면접시험 당일	
최종 합격자	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판정일 1년 미만) 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자.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1부. 차. 서약서 1부. 카.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1부.	최종 합격 후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2. 7. 26.(화) ~ 2022. 8. 2.(화) 16:30 까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gunwihs@naver.com)
- 접수처: 군위고등학교 1층 교무지원센터(본인 직접 제출일 경우)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통지) 예정일: 2022. 8. 3.(수) 15:00~

다.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2. 8. 4.(목) 14:00~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22. 8. 5.(금) 14:00 이후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위고등학교(☎383-2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 채용과목:
- 성 명:
- 생년월일:

【작성요령】

1. 자유롭게 기재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휴먼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2022. . .

작 성 자

(서명)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위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